

의안번호	2218380
의 퇴 인	주호영 의원
회 답 일	2026. 6. 24.
추계번호	26C2195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42조 (「공무원연금법」 및 「공무원 재해 보상법」의 준용)	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로서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이 「지역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를 준용하지 아니함 ※ (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)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1. 이 법이나 「군인연금법」 또는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을 적용받는 공무원·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.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·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·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·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2조 (「공무원연금법」 및 「공무원 재해 보상법」의 준용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급받던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여도 연금을 지급정지하지 않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재 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를 준용함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지역보건의료기관(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 등)에 근무할 경우 해당 근무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 됨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의료인의 수와 해당자들의 연금액 수준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사학연금 수급자인 의료인들의 행태변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